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 항공회 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글라이딩 국가대표선수를 선발, 관리 및 파견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게 국가대표를 선발함과 동시에 선발된 선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국가대표란 본 규정에 의해 선발된 정대표(해당경기의 출전 인원에 포함된 선수) 및 부대표(출전인원 외의 후보 및 상비선수)를 말하며, 국제항공연맹(FAI)과 올림픽위원회(IOC 및 AOC)가 주최하는 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가대항전에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고, 국내에서 위원회 소속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를 말한다. 선발전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내 개최 위원회 공인대회의 모든 경기를 말한다.

제 3 조(적용)

국가대표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며,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국가대표의 선발

제 4 조(자격)

국가대표가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유효한 회원이며, 고급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 한 자
- 2 위원회로부터 징계중이 아닌 자
-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 5 조(경기방식)

- 1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기 및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되는 경기는 국제항공연맹(FAI)의 경기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FAI Sporting Code Section 7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목을 분류한다.
 1. 행글라이딩 경기(Cross Country, Speed Gliding, Aerobatic)
- 2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파견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에서 채택하는 경기방식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기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
- 3 특정대회에서만 적용되는 로컬룰은 경기 개시 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첫 경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4 경기의 채점규칙은 FAI GAP 방식으로 경기 성격에 따라 경기위원회가 채택하여 공지하며, 해당 대회의 첫 경기가 개시된 이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선발기준)

- 1 차기 연도 국가대표 선발은 FAI Sporting Code, Section 7A Chapter 2 를 따르며, 세계 파일럿 랭킹 제도(WPRS)로 산정된 점수 순으로 한다. 동점자의 경우 세계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자, 전년도 국내리그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획득점수에 산입된 경기 외에 별도의

선발전을 개최하여 그 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 선발위원회는 해당 국제경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획득점수 산입 경기 중 일부 경기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정경기에 대한 가중점수는 본래의 획득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중치 부여 사실은 명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 7 조(경기의 진행)

제 5 조에 의해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되는 국내대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한다.

- 1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되는 국내경기는 장거리 종목의 경우에는 2 일 이상의 경기를 진행하되, 총 10 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대한민국 리그전의 성립 타스크가 5 타스크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2 일 간의 예비 경기일을 두어 보충 경기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경기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선발전은 종료된다.
- 3 대한민국 리그전의 각 개별대회는 리그전 차전 명칭과 더불어 대회 특성 상 따른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경기의 운영)

- 1 국가대표 선발에 관련된 경기의 운영은 위원회의 경기위원회가 주관하며, 경기위원회는 7 인 이내의 기술위원(Technical Committee)을 선임하여 경기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지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지부나 별도의 운영책임자(오거나이저)를 선정하여 대회 운영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3 기술위원은 국가대표선발위원회 및 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운영비의 조달 및 관리)

- 1 위원회는 국가대표 선발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 참가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 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한 운영비는 지도구입 또는 제작비, 행정비용 및 운송비등의 공동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1 인 1 일당 징수금액은 경기 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회에서 징수된 운영비의 지출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 대회별

사용내역을 위원회 및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잔여금은 사무국에서 통합 관리하되, 국가대표선수단의 파견 시 지원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선발전 참가자의 의무)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헬멧과 비상낙하산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에서 정한 보조 낙하산 재포장 규칙을 준수한다.
- 2 무전기와 휴대폰을 소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경기 중에는 통신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3 선수 안전을 도모하고 경기규칙을 설명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 4 위원회 및 경기운영자에 대한 면책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운중비행이나 역방향 회전등 자신 및 타인의 비행에 위해가 되는 조치를 삼가 해야 한다.
- 6 경기 중 안전사고 발생이나 기상악화 시 경기위원회의 비행중단, 비상착륙, 부상자구조 등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7 비행종료 후 최단시간 내에 자신의 무사착륙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비행여부를 막론하고 비행보고서(런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경기위원회 혹은 대회운영자의 안전 및 비행관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선발전 참가자에 대한 징계)

- 1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가 위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당해 경기의 0 점 처리 혹은 감점(10%, 20%, 50% 감점)
 2. 당해 대회에서의 전면적 배제 및 득점 무효화
 3. 당해 대회에서의 잔여경기 배제

4.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출전정지
- 2 경기위원회는 해당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해당선수 및 사고 관련 선수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에 무관한 주변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선수는 징계처분 통지로부터 3시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경기위원회 및 안전관리 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4 위③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대하여 해당선수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12 조(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 1 국가대표는 해당 국제경기에서 정한 할당 선수 인원으로 선발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조 ①항 기준으로 선발하되, 국가대표 출전 대상자중 출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할당 선수 인원만큼 차순위자에서 선발할 수 있다. 선발된 선수와 별도로 예비선수를 차순위자 중에서 3명까지 확보한다.
- 2 여자대표선수는 해당 국제경기에서 정한 할당 선수 인원으로 선발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조 ①항 기준으로 선발하되, 선발전 15위 이내의 선수로 제한한다.

제 13 조(국가대표의 권리)

선발된 국가대표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각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 및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 2 국가대표선수는 1년간 대내외적으로 국가대표선수로 호칭되며, 그 자격을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제 14 조(국가대표의 의무)

- 1 선발된 국가대표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할 의무
 2. 국가대표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3. 국가대표로 대회에 참여한 기간 동안 선수단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
 4. 각종지방대회 등 국제경기규정 외의 대회에 참가봉사(대회의 지원, 시범, 심판 등)할 의무
 5. 전국의 일반 활공장에서 회원들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지도 감독할 의무
- 2 국가대표선발을 전·후하여 1 호부터 5 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제 23 조 ②항 의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 3 장 국가대표 선발위원회

제 15 조(구성)

- 1 국가대표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분과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 3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4 해당 경기지역의 특수성 및 경기 룰에 관한 자문 및 강화훈련의 충실을 위하여 위원장은 3 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6 조(소집과 운영)

- 1 선발위원회는 위원회의 비상설조직으로 해당 국제경기의 경기개시 4 개월 전부터 해당 국제경기의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 2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제도의 연구, 경기규칙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 3 선발위원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선수단장이 국가대표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의결)

- 1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3 분지 2 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문위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주제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답변을 제출한 자는 출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3 위 ②호의 경우 질의 및 회시 서면 혹은 전자우편은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가대표 선수단

제 18 조(선수단 구성)

- 1 선수단은 선수단장 1 명, 팀 리더(감독) 1 명, 지원요원 약간 명, 경기 규정에 의 하여 국가별로 부여된 인원 에 해당하는 정 대표 및 부대표선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2 해당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수단의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선수단의 선임 및 임기)

- 1 국가대표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는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2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의 재임기간은 해당 경기의 선수단 해단식이 있을 때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3 지원요원은 위원회 회원 중 자원자에 한하여 선발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하며 그 임기는 대회 개최기간 10 일 전부터 해당 경기의 선수단 해단식이 있을 때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시 강화훈련 기간에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0 조(선수단의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선수단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선수단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국제대회에 참가 하였을 시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대표한다.
 2. 국내에서는 재임기간 중 선수단을 대표하며, 훈련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대표단 을 소집할 수 있다.
 3. 국제대회 기간 중 선수단 구성원에 대한 경기출전여부 결정, 징계 등 종합통제 권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사하며, 이 경우 선수단장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후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선수단장은 국제대회를 통해 국위를 선양시킬 의무와 선수단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진다.

- 2 팀 리더(감독)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팀 리더(감독)는 선수단장을 보좌하며, 선수단장 유고시 선수단을 대표한다.
 2. 팀 리더(감독)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각종 경기관련 회의에 참가하며,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역할을 한다.
 3. 팀 리더(감독)는 각종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총괄책임자로 선수단을 관리하며, 선수들의 안전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3 지원요원은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를 보좌하여, 선수들이 최선의 조건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4 국가대표 선수의 권리와 의무는 제 2 장의 규정에 따른다.
- 5 선수단장과 팀 리더(감독)는 겸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가대표선발위원회는 선수 중 1 인을 지명하여 선수단장과 팀 리더(감독)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1 조(선수단의 파견 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하여야 한다.

- 1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대회(대한민국 챔피언십대회, 리그전, 위원회공인대회 등)실시
- 2 국가대표선발위원회 개최
- 3 파견 선수의 강화 훈련
 1. 강화 훈련은 위원회가 선수단 결단식을 마친 즉시부터 1 개월 이내로 해당대회에 파견할 정대표 및 부대표 선수에 대하여 선수단장이 경기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 소집, 실시할 수 있다.
 2. 강화 훈련은 선수단장이 해당선수들의 일정을 참작하여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강화훈련을 차기년도 선발전 일정에 맞추어 진행 할 수 있다.
 3. 강화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는 효과적인 강화훈련이 될 수 있도록 경비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4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

- 5 국제대회 참가
- 6 국가대표 선수단 국제대회 참가결과 보고
- 7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제 22 조(선수단 지원)

위원회는 국가대표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 한다.

- 1 국가대표선수 증 및 기체에 부착하는 태극기 등 국가대표단 표지의 교부
- 2 국제대회 참가관련 제반행정 서류제공
- 3 선수들의 일정관리 및 이에 관련된 제반업무
- 4 국가대표 선수단복 등 필요물품 지원
- 5 분과위원회 표결을 거쳐 2/3 이상 찬성시 출전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징계)

- 1 국가대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와 위원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수단장과 팀 리더(감독)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2 파견 전 징계 해당대회의 파견 전 국가대표 선수의 위규행위 및 지시불복종, 화합저해행위, 혹은 제 15 조 ②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장은 해당선수에 대한 징계를 국가대표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호의 징계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서면 경고
 2. 해당경기에서의 국가대표 배제
 3. 2년 이하의 기간을 명시한 국가대표 배제
 4. 1년 이하의 기간을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정지

5. 위원회 제명

- 3 해당 대회 중 징계 해당대회를 위하여 출국한 때로부터 귀국 시까지 국가대표 선수의 위규행위 및 지시불복종, 화합저해행위, 국위손상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대표단장은 해당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및 서약서 징구
 2. 해당경기에서의 출전금지 및 귀국조치
 3. 출전선수 교체
 4. 대회 중 선수단장이 징계하는 경우 감독(팀 리더) 및 해당선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선수단장의 처분에 대하여 귀국 전에는 이의할 수 없다.
- 4 위 ③항의 경우 국가대표단장은 귀국즉시 위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국가대표 선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선수에 대하여 위 ②항 3 내지 5 호 소정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5 위 ③항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장을 겸임하는 감독(팀 리더) 혹은 선수는 국가 대표 선수단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 24 조(이의신청)

위 제 24 조 소정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5 일 이내 혹은 귀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